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254 발의연월일: 2024. 8. 27.

발 의 자:임오경·한민수·차지호

장철민·박 정·민병덕

진선미 • 임광현 • 서영교

박용갑・강유정・윤후덕

한정애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확충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인천 아파트, 충남 주차타위 전기차 화재 발생 등에 따라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우려가 증폭되고 있음.

이런 상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비율 적용시기가 도래에 따라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다수의 민 원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또는 주민단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·운영 비용과 화재 알림 및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·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충전시설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

보호하고자함(안 제8조의2제2항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·운영 영하려는 지역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하여 충전시설 설치·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의2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1항(종전의 제 10항) 중 "제7항 및 제8항"을 "제8항 및 제9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13항(종전의 제12항) 중 "제11항"을 "제12항"으로 한다.

⑥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알림 및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1조의2제6항"을 "제11조의2제7항"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제11조의2제9항"을 "제11조의2제10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"을 "제11조의2제8항 및 제9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	제8조의2(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
원) ① (생 략)	원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
	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
	설치 • 운영하려는 지역주민 또
	는 주민단체에 대하여 충전시
	설 설치・운영 비용의 일부를
	<u>지원할 수 있다.</u>
② <u>제1항</u> 에 따른 지원의 기준,	③ 제1항 및 제2항
방법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	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	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
전용주차구역 등) ① ~ ⑤ (생	전용주차구역 등) ① ~ ⑤ (현
략)	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⑥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
	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
	경우에는 화재 알림 및 소화설
	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
	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
	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
	소방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
	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⑥ ~ ⑨ (생 략)

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교통,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.

① (생략)

- ①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 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- 제13조(자금지원을 위한 재원) 제6조부터 제8조까지, 제8조의2, 제10조, 제11조제2항 및 <u>제11조의2제6항</u>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에서 지원할수있다.

1. ~ 3. (생략)

제16조(과태료) ① <u>제11조의2제9</u> <u>항</u>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 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

	⑦ ~ ⑩ (현행 제6항부터 제9
	항까지와 같음)
	<u> </u>
	제8항 및
	제9항
	<u>.</u>
	① (현행 제11항과 같음)
	 ③ 제12항
제	13조(자금지원을 위한 재원)
·	
	제11
	조의2제7항
	· 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	16조(과태료) ① 제11조의2제10
′,	항

-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② <u>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</u>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.

3	(생	략)
	\ O	1 /

② 제11조의2제8항 및 제9항
③ (현행과 같음)